

禮山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부문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등을 위탁계약에 포함 (안 제5조제2항)
- 공유재산 심의 대상 조정
 -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 추가 (안 제7조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군지역 99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심의 생략 (안 제7조제3항)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안 제23조제1항 내지 6항)
 - 일반용,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공공용,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경작용, 재산평정가격의 1% → 1%이상
 - 광업·채석용, 재산평정가격의 5% → 5%이상
 - 주거용, 재산평정가격의 2.5% → 2.5%이상

-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대학, 공공청사, 공장 등) 지방이전 및 종사자 100인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경우 공유지 대부요율인하 (안 제23조제10항)
 - 재산평가액의 5% → 1%이상
- 2층이상 상업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함 (안 제25조제2항)
-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 (안 제25조의2)
-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 (안 제28조제2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제 도입 (안 제28조의 2)

參考事項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제80조의2 제100조
- (기타)
- 공유재산 관리 개정조례 표준안 (충청남도)

檢討意見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문의 조문별 재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유치를 위하여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와 내부적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